

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0. 15(수) 평창군수(농축산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10. 27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10. 27(월) 제20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국내 최적의 황태 생산조건을 갖춘 평창군의 지역특성에 맞게,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, 산업·휴양·체험 결합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,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평창군의 대표적 소득원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- 웰빙 및 슬로푸드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식품인 황태를 평창군 명품황태 특구지정으로 지역 명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,

-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군 황태 브랜드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명태 본 고장으로서의 명성 회복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특구의 명칭
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

나. 특구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위치(주소)	특구면적	비고
	합 계	315,743m ²	
대상지 1	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71 일원	209,703m ²	터장 및 시설예정지
대상지 2	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54 일원	85,015m ²	터장 및 시설예정지
대상지 3	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 29임	21,025m ²	대형광고판 설치예정지

다. 대외적 표시방법

- 한 글 :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
- 영 문 : Gangwon(Sokcho, Pyeongchang, Goseong) Pollack Industry Special Zone

라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지정을 통해“평창 명품황태”기반시설 조성 및 생산 전문화 추진
 - 대량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: 덕장조성 및 운영 지원 및 저장시설 건립 지원
 -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 : 황태종합타운(판매장) 조성 및 황태 테마거리 정비
 - 지역산업화 구축 : R&D 연구지원 및 가공요리 등의 식품 개발
 - 마케팅 지원 및 강화 : 브랜드 개발 및 홍보, 포장재 개발지원, 안내간판 설치

4. 검토결과

- 본 의견 청취안은,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명태산업 광역 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『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』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군 특구의 위치와 면적은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671번지 일원(95필지) 209,703㎡,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54번지 일원(62필지)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번지 31,025㎡ 이며,

- 강원(속초·평창·고성)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통한 평창군 황태의 지역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황태를 활용한 산업·휴양·체험 등 결합형 관광자원의 개발과, 평창군의 대표적 소득원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은 황태를 이용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다만, 황태와 관련한 평창군의 특허,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이 전무한 상태로 대관령 황태의 가치제고와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사업 투자 보다는 대관령 황태 자체 브랜드 개발 및 홍보, R&D 연구지원 등 장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함